

평양국 제토론회 토론회

93. 11. 7-8

이훈재
7-6

《종군위안부》정책의 지휘, 명령체계에 대하여

간토 가꾸잉대학 조교수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성원

하야시 히로후미

《종군위안부》정책의 지휘, 명령체계에 대하여

본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종군위안부》정책의 지휘, 명령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룡해군, 외무성, 내무성, 조선 및 대만 총독부가 이에 관여하고있었다는것을 밝히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책임이 명확히 밝혀질것이다.

이 토론은,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가 진행하여온 자료조사와 토론의 성과에 기초한것이다.

(주) 주되는 참고문헌으로서 자료센터기관지인 분기간행물 《전쟁책임연구》창간호(1993년 9월)에 수록된 요시미 요시아끼 논문, 하야시 히로후미 논문 및 자료, 요시미 요시아끼 편집해설 《종군위안부자료집》,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적고찰》(미발표논문)

1. 파견군에 의한 위안소의 설치

륙군위안소는 《만주사변》직후부터 설치되였다.

그후 태평양전쟁이 개시될 때까지 군위안소의 설치, 《위안부》의 징집을 지시한것은 매개 파견군이였다.

1932년 3월 상해파견군 부참모장과 고급참모가
《륙군위안소》를 설치할데 대한 지시를 주고 참모가 설
치를 담당하였다.

일중 전면전쟁이 개시된 후인 1937년 12월 중
지나방면군이 군위안소를 설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 지시를 받은 상해파견군 참모 제2과 (후방담당) 가
안을 작성하고 참모장이 남경위안소의 설치를 담당하였다.

1938년 6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이 일본군에 의
한 강간사건이 《반일감정》을 조성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여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성적위안을 위한 설비》,
위안소를 설치할것을 관할부대들에 지시하였다.

1941년 7월경 관동군이 2만명의 《위안부》를
징집할것을 계획하고 참모가 조선총독부에 의뢰하여 8천
명의 《위안부》를 모아서 만주에 보냈다고 한다.

1942년 3월 남방군이 대만군에 《위안부》 50
명 (추가 20명을 포함하여 제 70명)을 보낼것을 의뢰
하였으며 대만 사령관은 헌병을 시켜서 위안소경영자 2명
을 선정하고 70명의 《위안부》행 보르네오에 보냈다.

이 조치는 사전에 륜군 대신에게 도해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진행하였다.

매 개 파견군들은 천황에 직속되어있었으며 군직접관계는 참모장의 특별지시를, 군정관계는 육군대신의 특별지시를 받았다.

파견군들에는 그 산하에 여러 개의 군이, 군 밑에는 사단이 있었다.

파견군들에서는 그 산하에 군, 사단 등의 참모가 헌병들과 협력하여 그곳 주민들속에서 《위안부》를 징집하였다.

또한 파견군 등이 업자를 선정하여 조선, 대만, 일본에 보내어 그곳 헌병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위안부》를 징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과 대만 총독부와 군사령부의 협력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천황은 조선총독, 대만총독을 임명하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있었다. 대만총독에 대해서는 척무대신이 감독권을 가지고있었으며 1942년 척무성이 폐지된 이후는 내무대신이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한 지시도 하달할수 있게 되었다.

조선총독에 대해서는 내무성이 일정한 범위에서 지시를 내릴수 있었을뿐이고 독자성이 강하였다.

○ 태평양 전쟁직전의 대본영 직속군 (해외)

- 지나파견군

대본영 (천황) 총참모장 - 남방군

 륙군대신 - 관동군

 - 조선군

 - 대만군

○ 같은 시기의 지나파견군의 구성

북 지나파견군

제11군

지나파견군

제13군

제23군

2. 륵군중앙의 통제와 지도

1938년 3월 륵군성 병무국 병무과가 작성한
《군위안소종사부모집에 관한 건》이 부관에 의하여 북지나
방면군에 하달되었다.

여기에는 파견군이 《위안부》를 모으기 위하여 내지
에 보낸 업자들이 《유괴와 류사》한 행동을 감행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파견군이 정
집을 통제하고 업자의 선정을 잘할데 대해서와 헌병, 경

찰과 련계를 긴밀히 할데 대하여 지시하고있다.

이 문서는 룡군대신의 위임을 받아 룡군차관, 병무국장 등의 결재를 받은것이다.

1940년 9월 룡군성 부관에 의하여 각 부대에 배포된 《지나사변의 경험으로부터 본 군기확립대책》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략탈, 강간 등의 악질범》이 《다발》하고있었다는것을 인정하고있으며 《성적위안소》를 포함하여 《위안 시설》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있다.

1942년 6월 룡군외무국 위생과가 작성한 《대동아전쟁관계장병의 성병조치에 관한 전》이 부관으로부터 각 부대에 하달되였다. 여기에는 성병예방을 위하여 위안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만에서 남방에 《위안부》를 보낼 때 룡군성이 허가를 주고있다.

일중전쟁시기에는 중국에 파견된 군이 주체가 되여 위안소가 설치되였으며 룡군중앙이 그것을 감독통제하는 형태였으나 태평양전쟁개시를 앞두고 군중앙이 위안소설치에 직접 관여해나섰다.

룡군은 군의소좌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위생상태에 대하여 사찰하게 하였는데 1941년 7월에 룡군성 내부회의에서 그 군의가 위안소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총장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사실상 강제적인
《위안부》징집을 제안하였다.

태평양전쟁 개시후 육군성 내외 국장회의, 과장회의들에
서는 남방에서 강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있다는듯이 거듭
보고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1942년 9월 과장회의에서 인사국
상훈과장이 《장교이하의 위안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자
고 한다. 북지나 100개, 중지나 140개, 남지나
40개, 남방 100개, 남해 10개, 싸할린 10개 계
400개 소》라고 제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남방을 포함하여 각지에 위안소가 설
치되었으나 육군중앙은 아직 모자라다고 판단하여 400
개소의 증설계획을 세워 위안소설치에 달라붙었던 것이다.

한편 육군성은 1942년 3월에 1942년도의 군
대비품정비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연간소모량 80%에
해당되는 《위생교무주머니》 1,530만개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 수자는 외지에 있는 병사 한사람당 거의 한달에
한개가 차례지는 것으로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1942년 1년동안

계 3, 210만 3, 700 개의 《위생교무주머니》가 공급되었다.

그것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육군성 경리국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 육군대신, 차관의 위임을 받아 고급부관과 경리국장 등의 결재를 받아 진행되었다.

또한 이 공급에는 대본영 병참총감부 참모장 (참모본부 제1부장이 겸임, 병참총감은 참모차장이 겸임) 과 육군군수품본창장 등이 관여하고있다.

육군성뿐만아니라 대본영도 이에 관여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공급은 대부분 지나파전군, 관동군, 남방군 등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위생교무주머니》는 파전군으로부터 군-사단-련대 순서로 내려보내어 말단 병사들에게 배급되었다.

남방에서는 초기에는 병참부서가 위안소개설을 담당하였는데 후에는 군정기관이 담당한 경우가 많은것 같다.

(말라이, 필리핀의 경우)

한편 현지부대에 의한 폭력적인 《위안부》의 련행도 수많은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육군성의 각 부서와 대본영이 《종군위안부》의 징집, 관리에 관여하고있으며 1942년부터는 직

접 위안소 설치에 달라붙은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부터도 특군의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군전체가 펼쳐나서 《종군위안부》 정책을 수행했던 것이다.

3. 해군의 경우

해군에 관한 자료는 적으며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1942년 5월 해군성 군축국장과 병비국장으로부터 서남방면함대 참모장에 대하여 《제2차 특별요원의 진출에 관한 건》이 하달되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스라바야(자와) 등 동남아세아의 6개소에 특별요원 즉 《위안부》를 보낼데 대해서와 위안소의 경영방침들이 지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세레베스 남부에서는 민정부장관(해군의 군정책임자)이 위안소설치의 허가와 감독을 하였으며 경영은 부대가 직접 한 것과 일반일본인이나 현지국민이 한 것이 있었다.

해군의 중앙과 각 강점지역들의 군정책임자가 《종군위안부》 정책을 수행하였다.

4. 내무성, 외무성

일중 전면전쟁이 개시된 직후인 1937년 8월 외무성은 외무차관 명의로 경시총감, 지사들, 관통주청장관에게 《불량분자의 지나에로의 도항단속에 관한 건》을 보냈다.

그때까지는 중국에로의 도항은 러권이 필요없었으나 그때부터는 도항자가 거주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지로부터 중국에 보내는 《위안부》에게도 적용되었다.

레컨데 1937년 12월 후꾸오까현 지사는 내부대신과 외무대신에게 해군의 《위안부》로서 상해에로 도항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중국의 제남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위한소모집》을 위하여 귀국하게 되어 신분증명서를 제남총령사로부터 발급받아 오이따현에 와서 《위안부》를 징집하고나서 경찰서에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1938년 4월 오이따현 지사가 외무성에 발급가부를 문의했는데 외무성 미국국장으로부터 발급해도 좋다는 회답을 받았다.

《위안부》모집업자의 일본에로의 파견, 《위안부》를 보내고 접수하는데서 외무성, 총령사, 내무성, 지사, 경찰서장이 편의를 도모하고있다.

대만총독부에도 같은 자료가 남아있다.

조선총독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추측된다.

《종군위안부》를 모집하고 내보내는데서는 내무성, 외무성도 같이 관여하였다.

맺는말

일본육군의 위안소는 처음에는 중국에 파견된 파견군이 주관하여 설치되어 나갔으며 그것을 군중앙이 관리통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개시되자 육군중앙 자체가 위안소의 설치에 달라붙었다.

《종군위안부》정책은 육군성, 대본영을 포함한 육군의 전체가 조직추진 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해군도 마찬가지였다.

군의 《종군위안부》정책에는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내무성(지사, 경찰을 포함)과 외무성(총령사포함)도 관여하였다.

내무성은 지방행정, 경찰, 토목, 사회위생 등을 말아보

고 있던 내정의 중속에 위치하고 있는 관청이다.

《종군위안부》의 제도는 특해군을 비롯하여 외무성, 내무성도 관여한 전국가적인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라는 것은 명확하다.